##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 306 제출연월일 : 2014. 4.10

제출자 : 장문혁 대표의원 찬성자 : 이만재,정문섭

유인환,이정율

박종욱 의워

## 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4년 4월 22일, 1일간으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『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』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## 3. 참고사항: 없음

# 심 사 계 획

#### 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## 2. 심사안건
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

## 3. 활동기간

○ 2014년 4월 22일, 1일간으로 한다.

## 4. 구 성

○ 정문섭 의원, 이만재 의원, 유인환 의원, 박종욱 의원, 이정율혁 의원, 장문혁 의원

### 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고
2014. 4.22 (화)	ᅵᅰ히시시티티법	<ol> <li>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</li> <li>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</li> <li>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</li> </ol>	